

평창군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9
----------	----

제출연월일 : 2006년 12월 1일
제 출 자 : 함 명 섭의원외 5인

1. 제안이유

가. 평창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감정인,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을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감정료로 규정함.(안 제2조)
- 나. 비용의 지급기준 및 지급일수의 계산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4조)
- 다. 비용지급의 제외대상 및 제외규정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 계 법 령 : 별첨
- 나. 집행부 의견 : 별첨
- 다. 예 산 조 치 : 향후조치

평창군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①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②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및 별표2를 준용한다.

제4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 등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5조(비용지급의 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군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11. 생략

②생략

제123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재정 등)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